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세버스 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전세버스운송사업자

부 칙

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4(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)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”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1조의4(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전세버스운송사업자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24